

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 
활동결과보고서

의안 번호	제 253 호
의결 년월일	2004. 5. 17 (제112회)

제안년월일 : 2004. 5. 15

제안자 : 조례제정및정비

특별위원장

I. 총 평

- 부천시의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시민생활에 불편함과 규제목적의 조례를 발취하여 개정하고, 유명무실한 조례를 과감히 통, 폐합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드리고자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음.
- 당초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예정으로 운영을 하였으나, 활동기간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보다 충실한 활동과 기 검토된 조례의 제·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여 운영함을 의결하였음.
-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윤중 의원, 간사에 김제광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운영되었으며 3개의 소속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 조례안의 제·개정 검토 및 타·시군 우수 조례의 발취와 특색 조례운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음.

- 먼저, 347건의 전국 특색조례를 행정자치부에 협조하여 목록 발췌와 함께 조례 본문을 특위위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 하였고, 시에서 운영중인 조례와 관련 및 지침 등에 대하여도 분과별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,
- 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·개정 등 정비에 따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입법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조례제정 및 정비 과정과 기술 및 심사기법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- 특히,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들의 통행과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“부천시보행환경개선 에 관한조례” 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부실시공의 예방과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“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 관한조례” 를 제정하였으며,
- 도심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,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“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” 와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(洞)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“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” 를 개정하는 등 다수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·검토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.

## II. 특위활동 현황

### 1.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구성

가. 특위구성 의결 : 부천시의회 제99회 임시회(2002. 9. 10)

나. 구성인원 : 9명

-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3명씩 추천

다. 활동기간 : 20개월(1회 활동기간 연장)

- 제1차 : 2002. 11. 1 ~ 2003. 10. 31(12개월간)
- 제2차 : 2003. 11. 1 ~ 2004. 6. 30(8개월간)

### 2. 특위 활동계획(안) 의결

가. 활동계획(안) 의결 : 제100회 임시회(2002. 10. 10)

나. 특위구성

- 위원장 : 정 윤 종 의원, 간 사 : 김 제 광 의원
- 분과위원회 : 3개 분과, 9명
  - 기획재정분과(분과장 정영태 의원) : 김제광, 이영우 의원
  - 행정복지분과(분과장 이재진 의원) : 정윤종, 한선재 의원
  - 건설교통분과(분과장 조규양 의원) : 김혜성, 박병화 의원

다. 주요내용

- 불합리한 시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 조례 개정
- 시대성과 행정상황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폐지
- 상위 법령의 사문화로 인한 조례 폐지
-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조례의 적극 제정
-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우선 제·개정
- 타·시군 우수조례 및 특색조례의 벤치마킹

### 3. 회의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1차 회의

- 일 시 : 2002. 9. 17(화) 11:00
- 주요내용
  - 위원장 및 간사 선임(위원장 정윤종 의원, 간사 김제광 의원)
  - 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 등 협의

#### 나. 제2차 회의

- 일 시 : 2002. 10. 4(금) 11:00
- 주요내용
  - 특위 활동계획서 자체심사(분과별 심사) 협의
  - 특위 활동계획서 의결

#### 다. 제3차 회의

- 일 시 : 2003. 1. 27(월) 11:00
- 주요내용
  - 분과 위원별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 확인
  - 향후 추진계획 토론 및 협의

#### 라. 제4차 회의

- 일 시 : 2003. 4. 28(월) 14:00
- 주요내용
  - 의원별 담당조례 검토에 따른 제안설명 및 토론
    - ▶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검토

- 조례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실시의 건 협의
  - ▶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의정자문과제 부여  
(과제명 : 올바른 조례제정 및 정비에 따른 연구방안)

#### 마. 제5차 회의

- 일 시 : 2003. 6. 13(금) 10:00
- 주요내용
  -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
  -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
  - 올바른 조례제정 및 정비에 따른 연구방안 특강 실시
  - ▶ 강 사 : 서우선 의정자문위원(지방자치연구소장)  
(의정자문 연구과제 유인 배부 : 70부)
  - ※ 제105회 정례회 :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
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의결

#### 바. 제6차 회의

- 일 시 : 2003. 9. 29(금) 11:00
- 주요내용
  -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 및 시 담당부서  
의견청취
  - 관련 유관기관 의견서 제출 협조

#### 사. 제7차 회의

- 일 시 : 2003. 8. 22(금) 11:00

○ 주요내용

-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
-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

※ 제107회 임시회 :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 
제정안 및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  
조례증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의결

아. 제8차 회의

○ 일 시 : 2003. 10. 24(금) 11:00

○ 주요내용

-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
-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협의

자.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

○ 일 시 : 2003. 10. 31(금)

○ 연장기간 : 2003. 11. 1 ~ 2004. 6. 30(6개월간)

○ 사 유

- 검토 중인 조례 등에 대한 사항 지속 추진
- 타·시군 조례 벤치마킹 및 시민생활편의 도모 차원의  
조례 지속 검토

차. 제9차 회의

○ 일 시 : 2003. 11. 26(수) 11:00

○ 주요내용

-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시 담당  
부서 의견개진 및 심사

※ 제109회 정례회 :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  
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

#### 카. 제10차 회의

- 일 시 : 2004. 1. 27(화) 11:00
- 주요내용
  -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 심사
  -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 심사

#### 타. 제11차 회의

- 일 시 : 2004. 3. 5(금) 11:00
- 주요내용
  -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 담당부서 의견 개진  
및 심사
  -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 담당부서 의견 개진  
및 심사
- ※ 현행 조례 유지  
(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내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 
조항을 긍정적으로 운용토록 촉구)

#### 파. 제12차 회의

- 일 시 : 2004. 5. 14(금) 14:00
- 주요내용
  -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

### Ⅲ. 특위 활동 성과

- 조례 제정 및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·검토하여 제·개정을 추진하였으며, 시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·부당함과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제·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편안함과 안정을 주도록 하는데 본 특위 활동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,
- 조례는 단순한 행정집행을 위한 규정과 통제의 개념에서 벗어나,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을 위한 규정으로의 제·개정이 가능하며, 통제만이 아닌 다수 시민들에게 잘 적용되어, 나아가서는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어 시민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(Up - Grade) 시킬 수 있는 측면이 많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.
- 활동기간의 제한과 소속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례 제정 2건을 비롯하여, 개정 2건과 220건의 조례를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, 특위 활동 경험이 향후 의원들 각자가 조례에 대한 접근방식과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됨.